

#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 순 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85
----------	---------

발의연월일: 2020년 9월 일

발 의 자: 송순호, 김동협, 신낙형, 박성호

이충현, 강선영, 정정희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헌혈권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우선참여 항목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혈액수급에 기여하고 헌혈에 참여한 직원에 대한 충분한 휴식과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헌혈의 필요성과 헌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3. 주요내용

가. 헌혈활동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함(안 제3조)

나. 헌혈 권장사업계획의 내용에 공공기관 우선참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 제3호)

다. 공공기관 우선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직원에 대한 공가 활용 장려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안 제4조의2)

라.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잘못된 단어를 바로잡고 모호한 용어를 수정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혈액관리법」 제4조, 제6조제3항
- 2)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조부서 : 의약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20. 9. 4. ~ 2020. 9. 8.      결과: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제2항”을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의”를 “용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구민”을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비영리법인·단체”를 “단체”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설립한 공단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헌혈의 권장)”을 “(구청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에 의한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높이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기관 우선참여에 관한 사항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공기관 우선참여) 구청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헌혈 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서 정한 공가 활용 장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 근로자에 대한 헌혈 공가 도입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제6조제1항 중 “비영리법인·단체”를 “단체”로 한다.

제7조 중 “자”를 “개인이나 단체”로 한다.

제9조 중 “누설하여서는 아니”를 “누설해서는 안”으로 한다.

제10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혈액관리법시행령</u>」 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u>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u>를 말한다.</p> <p>2. (생략)</p> <p>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u>비영리법인·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u>를 말한다.</p> <p>&lt;신설&gt;</p>	<p>제1조(목적) ----- 「<u>혈액관리법시행령</u>」 제2조제2항-----</p> <p>-----</p> <p>-----</p> <p>-----</p> <p>-----</p> <p>-----</p> <p>제2조(정의) -----</p> <p>-- <u>용어</u>-----</p> <p>1.-----</p> <p><u>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국민”이라 한다)</u>-----</p> <p>-----</p> <p>2. (현행과 같음)</p> <p>3. -----</p> <p>----- <u>단체</u>-----</p> <p>-----</p> <p>-----</p> <p>4. “<u>공공기관</u>”이란 「<u>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u>」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u>지방공기업법</u>」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p>

제3조(헌혈의 권장)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생략)

<신 설>

3. (생략)

<신 설>

구가 설립한 공단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혈액관리법」 제6조 제3항에 의한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높이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공공기관 우선참여에 관한 사항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4조의2(공공기관 우선참여) 구청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헌혈 시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  
서 정한 공가 활용 장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  
립된 공단 근로자에 대한 헌  
혈 공가 도입 등 인센티브 방  
안 마련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단체 등  
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  
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  
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  
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  
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포상) 구청장은 헌혈과 관  
련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  
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권장활동과 헌  
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  
나 참여한 개인 및 단체는 그  
사업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단체 등  
에 대한 지원) ① -----  
-----  
-----  
-----

단체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포상) -----  
----- 개인이나 단체  
-----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의무) ---  
-----  
-----  
-----

누설해

<p><u>여서는 아니 된다.</u></p> <p>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서는 안</u> -----.</p> <p>제10조(시행규칙) -----</p> <p>-- <u>필요</u>-----</p> <p>-----.</p>
---	--



## □ 「혈액관리법」

제4조(헌혈 권장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혈액관리업무) ① 혈액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혈액관리업무 중 채혈을 할 수 없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이하 "대한적십자사"라 한다)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제제 제조업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혈액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헌혈의 권장)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08.2.29, 2010.3.15>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9, 2019.5.28>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